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土海洋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22日(水)

場 所 國土海洋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계속)
4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
45.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계속)
4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審査된案件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송영길·유기준·강창일·이경재·안규백·양정례·김성곤·김정권·정태근·윤영 의원 발의)(계속) 4
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6.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안홍준·주승용·김성태·손숙미·정희수·이철우·여상규·윤두환·장광근·이달곤 의원 발의)(계속) 4
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계속) 4
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81)(계속) 4
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12)(계속) 4
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92)(계속) 4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3.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14.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4)(계속) 5
15.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97)(계속) 5
16.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7.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성곤·송영길·양승조·정하균·장세환·추미애·문학진·최연희·최문순·원유철·김영진·김춘진·이종걸·김재윤·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5
1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김성곤·송영길·양승조·정하균·장세환·추미애·문학진·최연희·최문순·원유철·김영진·김춘진·이종걸·김재윤·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5

남 의원 발의)(계속)	5
1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변웅전 · 윤석용 · 이정선 · 신상진 · 유재중 · 김창수 · 박상돈 · 강명순 · 전현희 · 정미경 · 심대평 · 김낙성 · 이상민 · 양승조 · 이진삼 · 임영호 · 진혜숙 · 임두성 · 이윤석 · 정하균 · 주승용 · 송영길 · 백원우 · 김용구 · 이명수 · 박선영 · 이용희 · 조순형 · 이영애 · 이재선 · 박근혜 · 류근찬 · 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5
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나성린 · 김세연 · 손범규 · 안효대 · 최연희 · 유재중 · 김우남 · 임두성 · 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5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김태원 · 고승덕 · 유기준 · 강석호 · 이인기 · 양정례 · 정영희 · 안상수 · 유성엽 · 홍일표 · 이성현 의원 발의)(계속)	5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 · 안상수 · 박상은 · 김정권 · 김무성 · 안홍준 · 우제창 · 조진래 · 김동성 · 윤영 의원 발의)(계속)	5
2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고승덕 · 유성엽 · 이재선 · 원희룡 · 김성태 · 정영희 · 백성운 · 강석호 · 김성수 · 이정선 · 홍일표 · 박보환 · 나경원 · 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5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정의화 · 정영희 · 이화수 · 강석호 · 권영진 · 안상수 · 이인기 · 허태열 · 나성린 · 김충환 의원 발의)(계속)	5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강성천 · 이명규 · 원희룡 · 정영희 · 신상진 · 오제세 · 김성곤 · 권영진 · 조운선 · 강운태 · 안상수 · 고승덕 · 강석호 · 정하균 · 황우여 · 박종희 · 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5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 · 김을동 · 권경석 · 이에주 · 이학재 · 한선교 · 김정권 · 신성범 · 유기준 · 김희철 · 양정례 · 구본철 · 신상진 · 정영희 · 이한성 · 손범규 · 안상수 · 김영진 · 정양석 · 황우여 · 김동성 · 이화수 · 김충조 · 백성운 · 김학송 의원 발의)(계속)	5
3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 · 김정권 · 신상진 · 양정례 · 안상수 · 조운선 · 김효재 · 이인기 · 구본철 · 이성현 · 이한성 · 허태열 · 안홍준 · 이정선 · 현기환 · 황우여 · 백성운 · 정하균 · 김동성 · 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5
3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동철 · 강창일 · 김성순 · 우제창 · 문학진 · 이용섭 · 김성곤 · 김우남 · 정희수 · 안상수 · 이해봉 · 양정례 의원 발의)(계속)	5
3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3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임두성 · 이정현 · 이명수 · 정하균 · 손범규 · 정영희 · 이한성 · 이정선 · 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6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4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권영진 · 김성식 · 김성태 · 김영우 · 김정	

훈 · 이진복 · 주광덕 · 현기환 · 황영철 의원 발의) 6

42.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권영진 · 김성식 · 김성태 · 김영우 · 김정훈 · 이진복 · 주광덕 · 현기환 · 황영철 의원 발의) 6

43.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44.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 6

45.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발의)(우윤근 · 강창일 · 박기춘 · 박영선 · 이윤석 · 김영진 · 송민순 · 이춘석 · 김영록 · 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6

4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 · 신지호 · 구본철 · 고승덕 · 정영희 · 윤상현 · 박종근 · 이종혁 · 이계진 · 구상찬 · 김영우 · 이범래 · 배영식 · 나성린 · 김재경 · 정미경 · 장윤석 · 나경원 · 강용석 · 이명규 · 이한성 · 정양석 · 김정권 · 황영철 · 이철우 · 이은재 · 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6

4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김영진 · 양승조 · 유성엽 · 김재윤 · 홍재형 · 오제세 · 김성순 · 전병헌 · 최철국 의원 발의) 11

4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성순 · 김성수 · 김성곤 · 이미경 · 안규백 · 송영길 · 이용섭 · 김희철 · 이시중 · 최영희 · 유일호 · 최인기 · 조정식 · 강성중 · 백성운 · 강봉균 · 김춘진 · 신학용 · 김재균 의원 발의) 11

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 · 이미경 · 김성순 · 강창일 · 조정식 · 최규식 · 이시중 · 박영선 · 김성곤 · 이용섭 · 전병헌 · 최철국 의원 발의) 11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 · 강기정 · 김재균 · 이종걸 · 천정배 · 박기춘 · 양승조 · 최문순 · 박은수 서갑원 · 김희철 의원 발의) 11

5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 · 고승덕 · 강창일 · 김진표 · 김동철 · 김재윤 · 전병헌 · 김우남 · 이인제 · 김영진 · 이시중 · 박기춘 · 양승조 · 최영희 · 조정식 · 신낙균 · 박상돈 · 김희철 · 오제세 · 이미경 · 안규백 · 김성곤 · 추미애 의원 발의) 12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입법조사관 이정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석 입법조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법률안들을 심사 의결하고 5건의 법률안을 신규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은 의원 대표발의)(박상은 · 송영길 · 유기준 · 강창일 · 이경재 · 안규백 · 양정례 · 김성곤 · 김정권 · 정태근 · 윤영 의원 발의)(계속)

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 · 안홍준 · 주승용 · 김성태 · 손숙미 · 정희수 · 이철우 · 여상규 · 윤두환 · 장광근 · 이달곤 의원 발의)(계속)

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3)(계속)

8.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81)(계속)

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912)(계속)

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92)(계속)

12.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4.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94)(계속)**
15.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97)(계속)**
16.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開港秩序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성곤 · 송영길 · 양승조 · 정하균 · 장세환 · 추미애 · 문학진 · 최연희 · 최문순 · 원유철 · 김영진 · 김춘진 · 이종걸 · 김재윤 · 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18.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 · 김성곤 · 송영길 · 양승조 · 정하균 · 장세환 · 추미애 · 문학진 · 최연희 · 최문순 · 원유철 · 김영진 · 김춘진 · 이종걸 · 김재윤 · 김우남 의원 발의)(계속)**
19.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변웅전 · 윤석용 · 이정선 · 신상진 · 유재중 · 김창수 · 박상돈 · 강명순 · 전현희 · 정미경 · 심대평 · 김낙성 · 이상민 · 양승조 · 이진삼 · 임영호 · 전해숙 · 임두성 · 이윤석 · 정하균 · 주승용 · 송영길 · 백원우 · 김용구 · 이명수 · 박선영 · 이용희 · 조순형 · 이영애 · 이재선 · 박근혜 · 류근찬 · 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22.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발의)(이성현 · 나성린 · 김세연 · 손범규 · 안효대 · 최연희 · 유재중 · 김우남 · 임두성 · 허태열 의원 발의)(계속)**
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김태원 · 고승덕 · 유기준 · 강석호 · 이인기 · 양정례 · 정영희 · 안상수 · 유성엽 · 홍일표 · 이성현 의원 발의)(계속)**
2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 · 안상수 · 박상은 · 김정권 · 김무성 · 안홍준 · 우제창 · 조진래 · 김동성 · 윤영 의원 발의)(계속)**
2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 · 고승덕 · 유성엽 · 이재선 · 원희룡 · 김성태 · 정영희 · 백성운 · 강석호 · 김성수 · 이정선 · 홍일표 · 박보환 · 나경원 · 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 · 정의화 · 정영희 · 이화수 · 강석호 · 권영진 · 안상수 · 이인기 · 허태열 · 나성린 · 김충환 의원 발의)(계속)**
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 · 강성천 · 이명규 · 원희룡 · 정영희 · 신상진 · 오제세 · 김성곤 · 권영진 · 조운선 · 강운태 · 안상수 · 고승덕 · 강석호 · 정하균 · 황우여 · 박종희 · 이정선 의원 발의)(계속)**
3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형환 의원 대표발의)(안형환 · 김을동 · 권경석 · 이애주 · 이학재 · 한선교 · 김정권 · 신성범 · 유기준 · 김희철 · 양정례 · 구본철 · 신상진 · 정영희 · 이한성 · 손범규 · 안상수 · 김영진 · 정양석 · 황우여 · 김동성 · 이화수 · 김충조 · 백성운 · 김학송 의원 발의)(계속)**
33.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 · 김정권 · 신상진 · 양정례 · 안상수 · 조운선 · 김효재 · 이인기 · 구본철 · 이성현 · 이한성 · 허태열 · 안홍준 · 이정선 · 현기환 · 황우여 · 백성운 · 정하균 · 김동성 · 박지원 의원 발의)(계속)**
3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 · 김동철 · 강창일 · 김성순 · 우제창 · 문학진 · 이용섭 · 김성곤 · 김우남 · 정희수 · 안상수 · 이해봉 · 양정례 의원 발의)(계속)**
3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6.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현 의원 대표 발의)(이성현·임두성·이정현·이명수·정하균·손범규·정영희·이한성·이정선·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0.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김영우·김정훈·이진복·주광덕·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 42.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김영우·김정훈·이진복·주광덕·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 4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
- 45.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 의원 대표 발의)(우윤근·강창일·박기춘·박영선·이윤석·김영진·송민순·이춘석·김영록·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4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홍준표 의원 대표 발의)(홍준표·신지호·구본철·고승덕·정영희·윤상현·박종근·이종혁·이계진·구상찬·김영우·이범래·배영식·나성린·김재경·정미경·장윤석·나경원·강용석·이명규·이한성·정양석·김정권·황영철·이철우·이은재·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10시19분)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6항까지 이상 4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기춘 위원 나오셔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장 박기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심사위원회는 폐지하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과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며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주총회 규정을 선박투자회사에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서 전부개정법률안이나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항만에 제조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요트 등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등 해양스포츠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법률안이나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하고 실효성 없는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양별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별·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권한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개항질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역시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벌규정을 정비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수면비행선박과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해양사고 횡수나 안전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일반 이용자에게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전부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라는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기금협약 가입을 전제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상절차를 마련하고 일반선박의 연료유와 유류저장부선으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현 의원과 손범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자료요구와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나 특별자치도

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원 의원과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과 재활사업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학교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 청구나 공무원의 서류 검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요구·질문 등에 불응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경 의원과 본 위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통과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항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비용 부담 주체를 일원화하여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항공기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어 탑승 거절이 요청 또는 통보된 자에 대하여 탑승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철도 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통보 대상자와 통보 위반의 대상자를 구체화하고 통보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을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량 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 부조종사 자격 증명의 신설, 항공정비사 자격 증명의 통합, 항공안전 보고 제도의 도입 등 항공 관련 제도를 개편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면허체계를 정비하고,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측량기준점 표지를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관리하도록 하며, 지적측량 성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윤두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률안은 강창일 의원과 유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여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공기 소음 관련 제정법률안과 병합하여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허천 위원님!

○허천 위원 허천 위원입니다.

발언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어제 택

시법과 관련된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쓴 대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서 봐도 우리나라의 택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의 전 계층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는 선택받은 소수의 특권층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택시가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일부 조항에 있어 법적 정당성과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다소간의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택시면허 제도의 개선과 택시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 및 재정 그리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운송수단 제공과 수급 불균형, 고환율과 유가 폭등 등 유사 여객 행위들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택시운송업계에 큰 힘이 되어 줄 소중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한 합당한 취지를 정부는 이미 충분히 알고 파악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근거 법률이 없다고 두 손을 놓고 있지도 않을 것으로 알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는 그런 정부일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국회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특별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의결한 약속 기간을 엄격히 지켜서 훌륭한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어서 택시업계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어제 법안소위 통과와 관련된 매듭짓는 결론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허천 위원님.

다음, 이시종 위원님은 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법안심사소위원 아닙니까?

○이시종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런데 또 말씀하실 겁니까?

○이시종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말씀하세요.

○**이시종 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말씀을 못 하니까?

○**위원장 이병석**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다루었습니까?

○**박기춘 위원** 허천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 아닙니까?

○**허천 위원** 자기 본인의 이야기는 안 하지요.

○**박기춘 위원**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 들어보라고요.

○**위원장 이병석** 얘기하세요.

○**이시종 위원** 저도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허천 위원님께서 또 말문을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 관계로 어제 엄청나게 격론이 있었던 것 장관께서 아마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차관, 보고드리셨지요, 장관한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들었습니다.

○**이시종 위원** 결국 감차 보상 문제인데 어제 하루 종일 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감차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것에 다 합의를 봤고 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자는 데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어제 통과를 최종적으로 못 한 것은 차관께서 워낙 '오늘은 말고 다음번 5월이나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 때 꼭 통과가 되도록 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들이 그 정도 양보했다는 것도 장관께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들었습니다.

○**이시종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요.

어쨌든 5월이나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 때 택시 감차 보상에 관련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준다는 어제 차관의 약속을 장관께서도 같이하시는 겁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일단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빨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어제 차관께서는 '물론 관계부처 협의할 사항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것이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어제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만약에 정부가 5월 또는 6월 개최되는 임시국회 때 이것에 대해서 큰, 부정적으로 혹시

나오더라도 국회에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도, 그런 어떤 의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5월이나 6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이것이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그렇게 약속을 좀 해 주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알겠습니다.

○**이시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오늘 소위원회가 보고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의결할 이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이상 2건의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4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9항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12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및 15항, 이상 2건의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16항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3건의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의사일정 제20항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26항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상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및 제30항, 이상 2건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3

건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6항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및 제39항, 이상 2건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의사일정 제40항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44항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서와 대안 및 수정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박기춘 법안심사소 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17개의 법률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수고하셨습니다.

4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김영진·양승조·유성엽·김재윤·홍재형·오제세·김성순·전병헌·최철국 의원 발의)

4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성순·김성수·김성곤·이미경·안규백·송영길·이용섭·김희철·이시종·최영희·유일호·최인기·조정식·강성종·백성운·강봉균·김춘진·신학용·김재균 의원 발의)

4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이미경·김성순·강창일·조정식·최규식·이시종·박영선·김성곤·이용섭·전병헌·최철국 의원 발의)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강기정·김재균·이종걸·천정배·박기춘·양승조·최문순·박은수 서갑원·김희철 의원 발의)

5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순 의원 대표발의)(김성순·고승덕·강창일·김진표·김동철·김재운·전병헌·김우남·이인제·김영진·이시중·박기춘·양승조·최영희·조정식·신낙균·박상돈·김희철·오제세·이미경·안규백·김성곤·추미애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이병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

김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의원** 김성순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은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결여,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문제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 자체를 취소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사업성을 높이고 영세 서민 및 세입자를 위한 소형 아파트를 확대 공급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역세권 중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중심지형에는 상업·공업지역 중심의 도시 기능이 위주였으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역세권, 간선도로 그리고 교차지 등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높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확대 공급토록 했습니다.

둘째,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정하고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셋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간을 60일 이내로 한정하는 등 대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이미 국토해양

부와 서울시 간에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아무쪼록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검토·심의하신 후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시어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하며 특히 영세서민 및 세입자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임병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순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47항의 김희철 의원 안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등이 사업 시행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비용분담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임의적 지원 규정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순 의원 안은 역세권 등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우선사업구역제도,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취지는 대체로 긍정적이나 국·공유지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다른 무상양여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의 김희철 의원 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 시행자와 협력하여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세입자 등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재정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순환 주택 확보에 필요한 비용 문제 등 현실적인 측면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병헌 의원 안은 역세권 등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융합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신설하여 학교시설기준 및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영세상인 및 상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유사한 형태인 고밀복합형 유형을 신설하는 김성순 의원님 안과 통합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상가 세입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성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긴급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의 계층의 주거 안정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임차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우선 공급 규정은 입주 대상자의 임대료 부담 능력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임차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임대조건을 차등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차등 부과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입주자들 간의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사업 주체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산·실업 상태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나 관리비 감면이 임대사업자 및 다른 임차인으로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병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들의 소위원회 회부를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1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5건의 법률안이 소위로 회부되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하실 안건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안건 중에서 3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위원회에 165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체로는 271건의 법률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계류 안건을 생각하면 법안소위의 법률안 심사가 짧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절한 일정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박기춘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좋은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대체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은 정진섭 위원님과 박상은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체토론은 7분간 질의를 하시고 5분간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섭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이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것보다 도심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관심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김희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법안을 하나 내 주셨는데 순환개발방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 이론적으로는 이주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살게 하고 다시 개발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살게 하면 정착률도 높이고 좋은데 문제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컨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현재 예상되는, 도심재생사업과 비취볼

때 얼마 정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은 확일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충형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사업지 인근에 임대주택 등이 있으면 잘 활용하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시켜도 도심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 상황을 보시나요? 어떻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나 이 법이 목적하는 바, 다시 말하면 재정착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시행자에게 이것을 전부 부담시키기보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주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주택, 임대주택, 계층에 맞는 그런 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뉴타운사업 같은 것을 지원한다면 정착률도 높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100%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지금 김희철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의 방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 보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등의 사업에 대

해서, 이주단지 같은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도시에서 수요가 없어지면 분양이라든가 임대 등의 다른 목적에 써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좀 선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매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어느 특정지역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지역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SH공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주택들을 많이 지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순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오히려 서울시 같은 곳은 사정이 좋고 중소도시들이 뉴타운사업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이주단지 문제니까 저는 이 법이 잘 되어서 정부의 지원 하에 이주단지 등이 마련되어 가지고 순환 개발방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 점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주단지 등 또는 이주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어려운 중소도시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정책적으로 열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박상은 위원** 지금 법안은 소위로 넘어갔으니까 내가 줄이겠고요.

보금자리주택 문제, 지금 많은 서민들, 젊은이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지금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것에 대한 재원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재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지금 재정비 지역에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체하는 것들도 지금 PF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국가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정부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대들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해 줘야 지역에서, 지금 저희 정부가 대안을 만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자금 대책을 마련하고 또 지역별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진전시켜 나가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은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토공에서 거기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박상은 위원** 전체 지금 토공에서 얼마나 거기에다 투자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잠깐 숫자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500억 정도, 제가 그때 경제통상, 남북관계 했기 때문에 3500억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의 경수로처럼 우리 재산이 그대로 북한에 남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별도로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은 위원** 예, 어쨌든 누구도 우리 국민 중에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작금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가 어제 그 뉴스 보면서 야, 우리가 350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물론 또 거기에 지금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의 재산이 가 있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대안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상으로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는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성곤 위원** 법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 긴급 서면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이병석** 서면질의?

○**김성곤 위원** 예.

○**위원장 이병석** 말씀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장관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5월 중에 정부에서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5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오늘은 주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고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를 제가 제출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답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수박람회 주민 이주 문제가 상당히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주택공사하고 조 직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것이 타협이 잘 안 되어서 주민들이 또 시위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은 급한데 부작용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김성곤 위원님 서면질의 관련 의견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천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는 정부 측 답변과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20인)

강길부	강창일	김낙성	김성곤
김성순	김성태	박기춘	박상은
백성운	신영수	유정복	이병석
이시종	이인제	이재선	이해봉
장광근	정진섭	허천	현기환

○청가 위원(3인)

송광호 윤영 이용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병규
전문위원	성석호
전문위원	임진대

○정부측 참석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제2차관 최장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3 이병석·강석호·정희수·조원진·김정권·손범규·신영수·김성순·신상진·김성태·권영진·장광근·윤영·현기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09. 4. 13 정희수·이성현·김종률·정해걸·조원진·손범규·신영수·안홍준·이정선·안상수·김정권·이인기·강석호·이해봉·서청원·권영진 의원 발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09. 4. 13 이주영·이상민·이윤석·이종구·정희수·송훈석·이인기·노철래·손범규·이낙연·유성엽·김소남·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4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4 손범규·김태원·유기준·김옥이·이인기·윤상현·허태열·박준선·이한성·홍장표·김성수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09. 4. 14 손범규·김태원·유기준·김옥이·이인기·윤상현·허태열·박준선·이한성·홍장표·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5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09. 4. 16 현기환·김옥이·김무성·송영선·허원제·유재중·조원진·허범도·박민식·이진복·정희수·권영진·김정권·김세연·장제원·신성범·유기준·장광근·최구식·허천·이병석·백성운·이시종·윤영·김낙성·이해봉·유정복·김성태·이인제·강창일·박기춘·김성곤·김성식·주광덕·김영우·서병수 의원 발의)

4월 16일 회부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 의원 대표발의)

(2009. 4. 17 유정복·손범규·고승덕·정영희·김옥이·안상수·양정례·차명진·신영수·홍일표·김태원·김성수·한선교·박준선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4. 17 이인기·유기준·최인기·임두성·강석호·송영선·김종률·원희룡·김성수·손범규·유승민·유성엽·조원진·김효재·이정선·강길부·한선교·안효대·신상진·안상수·권영진·이해봉·우제창 의원 발의)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2009. 4. 17 이인기·유기준·최인기·임두성·강석호·김종률·원희룡·김성수·손범규·유성엽·조원진·김효재·이정선·강길부·한선교·안효대·신상진·이화수·이해봉·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20일 회부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 발의)

(2009. 4. 20 차명진·신영수·이은재·김학용·조해진·백성운·여상규·박보환·김태원·조진래·강명순·손숙미·정병국·김성수·신지호·진성호·박준선·김성희·윤상현·원유철·이화수·임해규·심재철·신상진·이군현·이범관·고홍길·이종구·진수희·나성린 의원 발의)

4월 21일 회부됨

○청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3항 개정
에 관한 청원**

(2009. 4. 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518번지 지1호 정옥기 외 1인으로부터 신상
진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0일 회부됨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손해감정 관련 공청회 개
최에 관한 청원**

(2009. 4. 10 충남 보령시 신후동 1848 신협
2층 박창수 외 31인으로부터 류근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10일 회부됨

반월특수지역 보상에 관한 청원

(2009. 4. 16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촌리 649-
294 삼촌리중소기업대책위원장 윤종호 외 116
인으로부터 이화수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4월 16일 회부됨